

## [공개질의서]

# 청소년, 대선후보에게 교육·청소년 정책을 묻는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www.asunaro.or.kr](http://www.asunaro.or.kr), 희망의 우리학교 [www.urischool.org](http://www.urischool.org)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입시로 대표되는 숨 막히는 무한경쟁교육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두 단체는 청소년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짓밟는 무한경쟁교육을 바꿔내고,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받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단체는 미래 사회의 주인이 아닌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자 교육·청소년정책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혁신과 변화의 뜻을 품고 대선에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교육·청소년 정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청소년들의 기대와 물음이 담긴 아래의 공개질의서에 꼭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 결과는 10월4일(목)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열망하는 전국 교육·인권·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에 앞서 진행되는 청소년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mail@urischool.org](mailto:mail@urischool.org)로 10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전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때에는 청소년들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신 것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의관련 문의사항은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010-4845-80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09.2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희망의 우리학교

# [공개질의서]

## 1. 학생인권에 대하여

1	욕설·체벌·기합, 두발·복장규제, 소지품검사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학생지도방식으로써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3	0교시 수업, 방과 후/방학 중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학습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5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지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6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성		반대	
7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반대	

## 2. 제도 밖 학생에 대하여

1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운영비 지원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3. 교육정책에 대하여

1	특목고, 대학서열화, 일제고사와 같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교육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	무상급식·무상교육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4. 청소년인권에 대하여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현행보다 인하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	----	--	----	--

2	교육감 선거에 학생·청소년들의 참여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	----	--	----	--

5. 우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초중등교육법 개정과 2)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후보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1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찬성		반대	
---	---	----	--	----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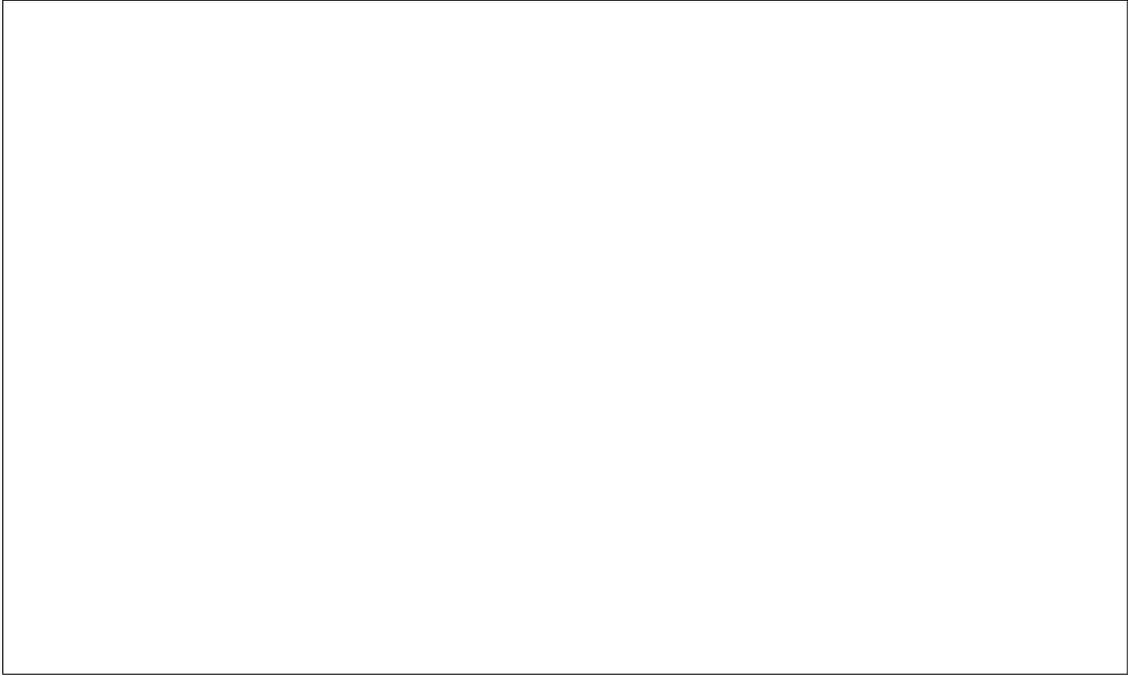
- 가. 학생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안 제8조제1항).
- 나. 학년별 학생회와 학급회 법제화 (안 제17조).
- 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명문화 (안 제17조의2).
- 라.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 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성별·외모·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 마. 학생인권침해 구제 및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설치 (안 제17조의4).
- 사. 학생징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학생이 재심을 청구 가능(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2	아동·청소년이 학교/사회/가정/시설에서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입법청원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	----	--	----	--

■ 주요내용

- 가. 가정과 학교, 학원 등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제1,2조)
- 나. 이후 아동·청소년인권법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되는 법률 개정의 근거 마련 (제22조)
- 라.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제42조)
- 마. 국가 소속 아동·청소년 기관, 시설, 교육기관(사설 학원 포함), 기업 등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 명시 (제25조~제34조)

6.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교육정책, 청소년정책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